

1. 개정 이유

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가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의 조기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의 조정(안 제16조)

관세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3. ~ 3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정경제부령 제 호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12를”을 “31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산할 금액의 이율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가산할 금액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“재정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 란 연 1천분의 <u>12</u> 를 말한다.	제16조(가산할 금액의 이율) ---- ----- ----- ----- <u>31</u> 을 -----.